

고성군이장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463호)

— 심사 보고서 —

1997. 12.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12. 24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1997. 12. 24

다. 상정·의결일자 : 1997. 12. 24

상임위원회 상정·의결

2. 개정이유

-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마을당 인구, 세대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마을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며, 통신·교통의 편리와 주민들의 지식수준 향상,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이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현행 행정리 단위의 마을을 통합하여 마을을 구성도록 희망하고 있음.

3. 주요골자

- 마암면 도전리 도전·기전 행정리를 통합 : 도전
- 마암면 장산리 장산·서장산 행정리를 통합 : 장산
- 마암면 신리 신리·신지 행정리를 통합 : 신리
- 마암면 석마리 석마·감동 행정리를 통합 : 석마

4.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 마을당 인구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마을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마을을 통합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경영균정으로 운영코자함은
-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나 지역주민의 통합, 명칭 등 마을간 갈등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통합에 따른 배경, 그간 추진경과 등 주민의견수렴 사항을 진행부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통합에 따른 의견수렴 현황은
- 답 :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추진사항이 아니고 주민스스로 추진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 없음.
- 문 : 행정절차 이행은 하였는지
- 답 :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음.
- 문 : 추진경과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는지
- 답 : 면장으로 부터 동의서 등 건의에 의함.

6. 토론 : 없음.

7. 심사결과

- 1997. 12.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